

제 27 조(개인정보 보호의무)

- 1) 수급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
- 2)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
- 3)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, 활용하며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
- 4) 기관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‘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’를 받거나 노인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방법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
- 5) 기관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해야 한다

